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02
----------	------

발의연월일 : 2017. 9. 5.

발의자 : 장제원 · 임이자 · 이진복

박성중 · 장석춘 · 김현아

강길부 · 권성동 · 안규백

문진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죄에 이용하려는 목적 또는 「도로교통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여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적발하더라도 해당 과태료가 미미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18호의2·제18호의3 신설, 안 제84조제3항제2호, 안 제84조제3항제7호 삭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에 제18호의2 및 제1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18의2.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제48조제

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 의무를 위

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4조(과태료) 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18.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19. ~ 24. (생 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 략)</p> <p>2.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p>	<p>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1. ~ 18. (현행과 같음)</p> <p><u>18의2.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u></p> <p><u>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u></p> <p>19. ~ 24.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p>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u>7.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u>	<u><삭 제></u>
<u>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u>	
<u>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u>	
7의2. ~ 9. (생 략)	7의2. ~ 9.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